



“자연적 문화재”에 대하여

히라사와 츠요시 (나라문화재연구소 유적정비연구실장)

1. ‘자연적 문화재’ 테마의 선정 이유

문화재는 유적이거나 명승지, 동물·식물·지질광물 등과 같이 토지와 밀착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지역의 풍토 속에서 성립되어 풍토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문화재는 어떤 토지의 자연환경에서 국토 환경, 더 나아가서는 지구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존재한다. 이 같은 특징은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모든 문화재에 대하여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재'는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에 의한 소산이다. 다시 말해 '문화재'는 그 구성물질이 인공적인 것인지 천연적인 것인지에 따른 개념이 아니다. '문화재'의 의미에는 인간 또는 인간의 생활을 지탱시켜 주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 요소로만 구성된 자연물이 '문화재'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 문화재와는 다르기 때문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나라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부 유적정비연구실 기획으로 2012년 2월 16일(금)과 17일(토)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유적(기념물 포함) 등의 매니지먼트 심포지엄」의 제1회 테마를 설정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자연적 문화재'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자연환경보호 운동을 떠올릴 것이다. 문화재로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다면 '위화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자연적 문화재'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문화재 담당자가 고고학이나 역사학 전공으로 '천연기념물'이나 '자연명승'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천연기념물'과 '자연명승'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번 기회에 '자연적 문화재'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고 싶기 때문이다.

본고는 '자연적 문화재'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2. ‘문화재’의 인식

일반적으로 ‘문화재’는 건조물, 회화작품, 조각, 공예품, 서적(書跡), 전적, 고문서 등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또한 예능, 공예, 민속 등과 관련된 유형, 무형의 소산을 떠올리기도 한다.

‘문화재’는 일반적으로 ‘문화’(혹은 ‘문화적’)의 ‘재(재산)’라고 이해된다. 그렇지만 ‘문화’라는 용어에는 인간이 성취해 온 업적을 미래에 계승시켜 발전시키려는 인간의 능력, 또 인간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의 작용에 의한 ‘재산’, 즉 예술, 학문, 도덕, 종교 등을 통해 만들어낸 것 또는 그 결과로 이해된다. 더구나 일본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문화’와 ‘자연’은 대비적인 개념으로 일반화되어 마치 ‘인공(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 ‘천연(인위적 행위가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관념은 문화재의 유형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로 부르고, 문화재를 지정할 때도 ‘중요문화재’(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유형민속문화재’, ‘중요무형민속문화재’), ‘국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과도 관련성이 깊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로서 창조 활동의 근원으로서도 작용하며, 인간의 풍속과 관습의 표상이다. 일반인들에게 “보호되고 있는 문화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라고 질문하면 제일 먼저 ‘중요문화재’ 또는 ‘국보’라고 대답한다.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은 건조물, 회화작품, 공예품, 고고자료, 역사자료 등 인위적으로 제작된 것들이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되는 ‘천연기념물’, ‘명승’, ‘중요 문화적 경관’, 그밖에 ‘사적’을 구성하는 토지,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역사적 풍치, ‘중요문화재’의 건조물 부지 등에서 ‘자연환경’이 배경으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문화’와 ‘자연’이란 용어는 Kultur(독일어)/culture(영어), Natur(독일어)/nature(영어)의 번역

어로서 메이지시대 중반부터 다이쇼시대에 걸쳐 일본에 정착되었는데 처음부터 대립되는 개념으로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

이 같은 견지에서 내용과 구성이 전혀 ‘문화재’ 같지 않은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문화재’로 취급하는 것은 당연히 ‘위화감’이 발생된다. 일본어의 ‘문화재’라는 단어는 ‘문화’와 ‘재’라는 두 단어를 합친 복합어로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자연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어의 ‘文化財’는 영어로 ‘cultural property’, 독일어로 ‘Kulturgut’, 한국어로는 ‘문화재’라 표기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문화’ (또는 ‘문화적’)와 ‘재산’을 조합시킨 단어를 사용하며, 일본어·한국어, 영어·독일어, 또는 다른 언어권에서도 ‘자연’과 ‘재산’을 합친 ‘자연재’라는 단어, 개념, 표현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화’와 ‘자연’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와 조합될 때 어느 정도 사용되는 단어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문화가치’, ‘문화국가’, ‘문화주의’, ‘문화권’, ‘자연계’, ‘자연재해’, ‘자연보호’, ‘자연주의’ 등이다. 이 중에서 ‘문화주의’와 ‘자연주의’의 경우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문화’는 ‘문명’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빈번히 등장한다. ‘문명’(영어 civilization/독일어 Zivilisation)은 인간사회가 물질적, 기술적, 사회조직적으로 고도로 발전하여 풍요로운 상태를 이룩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면이 강조된 용어이다. 그에 반해 ‘문화’(영어 culture/독일어 Kultur)는 지구상에 살아 가는 인간들의 다양한 생활 양식, 기술, 예술, 학문 등의 정신적 창조성이 강조되어 있는 용어이다. ‘문화’는 어찌 보면 ‘문명’이란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개념도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소실되는 부분을 인식하게 되면서 형성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와 ‘자연’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문명’에 대하여 인간의 정신(마음)과 몸(물체)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획기적인 기술혁신과 세계적인 산업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문명의 비약적인 진보와 그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경험하였다. 인류는 생존 공간으로서의 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체계적 개념을 성립시켰다. 또한 그 실천 방안으로서 ‘생물다양성(diversity)’, ‘순환형 사회(Society with an Environmentally-Sound Material Cycle)’를 탄생시켰다. 전술한 용어들은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나 ‘순환형 사회’의 대

상은 첫 번째로 다양한 세계관을 갖는 민족과 집단¹⁾의 ‘문화’이다. 두 번째로는 유형·무형의 표상인 ‘문화재’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도 지각조차 못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곳의 ‘자연환경’이다. ‘지속가능성’이나 ‘생물다양성’, ‘순환형 사회’ 등의 개념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관된 테마는 ‘인공’과 ‘천연’이라는 대립(또는 대립되어 보이는)된 개념들의 조화와 일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자연’과 ‘문화’의 일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자연적 문화재(또는 자연문화재)’라는 용어에 대한 ‘위화감’도 여러 번 표명되었다. 또한 지역의 ‘자연’과 ‘문화’가 그곳의 환경과 역사, 주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 관점과 구체적 사례로 증명되었다.

본 심포지엄에서 ‘자연적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결과 ‘위화감’의 안티테제(antithesis)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문화재’라는 용어는 ‘문화’의 한가지 형태로서의 인공적·천연적 소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총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3. 문화재와 관련된 자연의 중요성

이전에 문화적 경관으로서 삼림에 대한 논고에서 문화재와 삼림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이번 심포지엄 개최취지의 논제 중 하나인 ‘문화재와 관련된 자연의 중요성’은 앞의 논고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내용 중 우선 전제로 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 문화재가 모두 삼림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즉 동양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서양의 ‘석조문화’에 대하여 ‘목조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형이고, 국토면적의 2/3가 삼림이다. 일본의 역사, 문화, 자연, 그리고 그들의 형성과정에서 삼림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 ‘문화재’의 상호 관계를 논할 경우 삼림과의 관계성 검토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연적 문화재’와 관련된 ‘목조문화’ 문화재에서 자연의 중요성을 다룰 때에도 원용(援用)하기로 하였다.

본고에서 약간의 표현을 바꾸어 ‘일본의 ‘문화재’에 있어서 ‘자연’이란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 정리해 보면

①문화재의 소재를 만들어내는 “근원”

②문화재의 재료를 조달하는 “장소”

③문화재의 가치를 지닌 “대상”

④문화재와 일체화된 “환경”

⑤유형·무형의 문화재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의 생활·생업을 영위하는 “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항목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의 예시를 근거로 한 것이다. 위의 항목들이 문화재와 관련된 자연의 중요성을 얼마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편의상 규정된 ‘문화재’ 유형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과 ②는 건조물, 조각 등의 ‘유형문화재’, ③은 협곡 · 해변 · 산악, 그 밖의 관광의 대상으로 중요한 자연의 ‘명승지’, 학술상 중요한 ‘동물 · 식물 · 지질광물’ 등의 천연 소산 ④는 고분 · 성터 · 사원경내 · 정원 등 ‘유적’의 내외부, 건조물의 주변 환경, ‘전통적 건조물군’과 일체화된 역사적 풍치 환경 ⑤사람들의 생활과 생업의 배경이 되는 풍토 그 자체 또는 그들의 연관성에 착목한 ‘문화적 경관’ 등이다. 본고에서는 ‘문화재’의 인식과의 관련해서 특히 ①과 ②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문화재’란 지금까지 사람들이 쌓아 온 역사와 전통 위에서 성립된 것으로 그 재료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자연환경에서 조달된다. 건조물을 예로 들면 구조재 · 용재로 쓰이는 삼나무 · 편백나무 · 소나무 · 화백나무, 도장재 · 접착제로 쓰이는 옻나무, 지붕재료로 쓰이는 억새 · 갈대, 미장재 · 지붕재 · 의장재로 쓰이는 대나무, 바닥 재료로 쓰이는 골풀 등의 ‘식물성 자재’를 들 수 있다. 또 기와 · 벽돌 · 바닥흙 · 벽흙의 재료로 쓰이는 점토류, 회반죽 재료에 쓰이는 석회 · 조개회, 내외벽 · 바닥용마감재 · 옹벽 · 목조기초 · 콘크리트골조로 쓰이는 석재 등의 ‘광물성 자재’ 등이 있다. 이들은 건조물뿐만 아니라 조각이나 공예품 등 기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을 만드는 도구의 재료이며, 회화작품이나 예능 · 공예 등의 창조적 계기를 제공하거나 또는 아이디어를 유도하는 소재들이다. 이들은 모두 직접 · 간접적으로 자연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만들어 진 유형문화재는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 유형문화재를 구성하는 소재 중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있고, 특수한 전통 기술에 의해서만 자재 가공이 가능한 것도 적지 않다. 제한된 천연 소재를 가공하여 전통 기술로 제작되는 ‘전통종이’ 또는 ‘염색안료’ 등은 고유한 풍토의 자연환경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는 문화재, 즉 물질적으로 구성되는 유형문화재, 정신적 연원으로 구성되는 무형문화재, 풍토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유형 · 무형의 민속문화재 등은 한 번 만들어지면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고유한 재료의 갱신이 필요하다. 즉, 이들을 유

지보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화재가 필요로 하는 고유한 재료를 조달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유한 재료를 조달할 특정한 “장소”, 즉 특정한 자연환경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였고, 생활습관과 환경이 변하면서 “근원” 또는 “장소”의 역할을 하던 자연환경이 급속도로 상실되거나 변질되었다. 일본의 경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수리용 자재 확보와 고유한 전통기술 계승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된 것은 1970년대이다. 그 후 1975년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통기술 · 기능의 계승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이때 ‘선정보존기술²⁾’ 규정이 제정되었다. 특히 건조물에 관해서는 수리용 자재수급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

건조물 분야에서는 정기적인 수리에 소요되는 자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수리 자재별 ‘지역 문화재 숲³⁾’을 설정하였고, ‘연수 및 보급계발시설의 정비’, ‘체험학습 · 평생학습’, ‘자원봉사 활동’, ‘기능자 연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문화재 숲 시스템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각 문화재의 기원과 탄생의 연유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유형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재를 지탱시켜주고 있는 자연의 육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의 공업생산활동 경제논리에 비추어 보면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문화재 수리 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는 인간과 자연과의 전통적 결합관계를 재확인시키고, 현대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재와 자연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이 한층 더 굳건해 지고 있다.

4. ‘자연적 문화재’와 매니지먼트

‘자연적 문화재’의 정의를 심포지엄 개최취지에서 “자연 환경이나 요소 또는 사람의 인위적 행위가 더해진 자연적 환경이나 요소 등이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문화재”라고 정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환경이나 요소’란 지금까지 문화재보존 정책에서는 정원 · 사토야마(里山:마을과 인접한 산) · 사토우미(里海:마을과 인접한 바다), 가축 · 가금 · 재배식물 등과 이들의 사육지 · 재배지 등 천연의 상태와 인공적 행위가 일체화되어 형성된 것(또는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왔다. 이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의 문화성’, ‘지역의 자연과 역사’, ‘현재와 장래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에 부딪치게 되었다.

현재 지구상에는 인위적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인구폭발, 삼림 파괴, 환경오염에 의한 생물 다양성 위협, 또한 온실가스의 대량 방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들은 환경의 자연정화작용을 넘어 인위적인 영향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위력은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 또는 ‘천연’의 의미에는 인위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 인간의 힘을 능가한 삼라만상,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신의 존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환경’에서는 자연의 여러 가지 요소 또는 현상이 인공적인 것인지 천연적인 것인지 일일이 따지거나 구분하지 않으므로 모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인류는 언어·사회·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세계를 분리하고 분할하면서 세계를 인식하고, 또한 그 범위 내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세계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분 짓거나 하지 않는다.

자연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널리 알려지면서 ‘문화재’와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문화재와 사회가 성립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문화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우리의 관계를 정립해 주는 상징이자 대변자이다. 또한 우리가 더 나은 장래를 구축해 가기 위한 초석이다. ‘자연’과 ‘문화’라는 대립되는 말의 함정에 빠져 우리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문화재’에 대한 실천의 본질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는 우리가 미래에 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부단하게 지속적으로 발견시켜야 할 대상의 총체이다. 그 요소가 자연적이던 문화적이던 관계없이 미래에 전해져야 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요점을 본고에서 재확인하였고, 총체로서의 매니지먼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주】

- 1) 근년에는 SNS (Social Network Service) 상에 구축된 가상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도 포함된다.
- 2) 문화재보호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1일 현재 문화재의 수리 및 기타 수리에 소요되는 도구, 재료 제작에 관한 기술 및 기능에 대하여 68건이 선정되었는데 보유자 46건 52명, 보존단체 29건 31단체 (중복적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단체 수는 29단체)가 인정되었다.
- 3) 참고문헌 17)에 의하면 근년에 40여 개소가 설정되었다.

【참고문헌】

- 1) 사단법인 전국 국보 중요문화재 소유자 연맹 (2002): “문화재 수리용 자재 ‘타타미’ 조사보고서”; 사단법인 전국 국보 중요문화재 소유자 연맹, 2002년 5월, 58pp
- 2) 다케우치 가즈히코 [武内和彦] 편 (2010): “화산분화 이재지의 역사적 정원 복원 자연환경 변천과 랜드스케이프의 보전 활용”; 도쿄대학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녹지창성학연구실, 126pp
- 3) 돗토리환경대학 아사카와연구실 편 (2010): “문화적 경관으로서의 수상 (水上) 취락론 - 세계자연유산 하동만의 지리정보와 거주 동태 분석 -”; 돗토리환경대학, 112pp
- 4) 히라사와 츠요시 [平澤 毅] (2009): “중요문화적 경관으로서의 삼림; 제120회 일본삼림학회 대회강연집, J12, * 테마별 심포지엄 “문화적 경관”으로서의 삼림의 미래상” 자료
- 5) 히라사와 츠요시 [平澤 毅] (2009): 일본의 문화유산인 풍치 경관의 보호와 보전 - 특히 그 역사와 ‘명승’의 보호에 대하여 -; “국제학술 심포지엄 ‘명승의 현황과 전망’”,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 p.p.71-268, ISBN978-89-6325-185-1
- 6) 히라사와 츠요시 [平澤 毅] (2010):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명승지”;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나라문화재연구소, 357pp
- 7) 히라사와 츠요시 [平澤 毅] (2011): 조원학이 주력해야 할 “유산”에 대하여; 랜드스케이프연구, 74 (4), p.p. 268-270
- 8) 히라사와 츠요시 [平澤 毅] (2011): 나라 시대까지의 정원 - 헤이안 시대 정원 검토의 전제로 -; “헤이안 시대 정원의 연구 - 고대정원 연구 II -”, 나라문화재연구소 학보, 제86권, p.p.9-39
- 9) 히라사와 츠요시 [平澤 毅] (2011): 일본의 명승 보호 - 보존과 활용, 그 대책과 동향 -; “韓·中·日 명승보존과 활용방안 자료집”,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 p.p.33-164, ISBN 978-89-6325-693-1
- 10) 히라사와 츠요시 [平澤 毅] (2011): 지역과 유적·유산 - “종합적 매니지먼트”에 대하여 -; “지역에서의 유적의 종합적 매니지먼트”,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나라문화재연구소, p.p.54-86
- 11) 문화청 (1978): “문화재건조물 수리용 자재수급 등 실태조사 보고서 (1) (식물성 자재)”; 문화청, 1978년 12월, 41pp
- 12) 문화청 문화재보호부 건조물과 (1982): “문화재건조물 수리용 자재수급 등 실태조사보고서 (2) (광물성 자재)”; 문화청, 1982년 12월, 137pp
- 13) 문화청 문화재보호부 건조물과 (1985): “문화재건조물 수리용 자재수급 등 실태조사보고서 (3) (화지 (일본 종이))”; 문화청, 1985년 1월, 129pp
- 14) 문화청 문화재보호부 건조물과 (1987): “문화재건조물 수리용 자재수급 등 실태조사보고서 (4) (안료)”; 문화청, 1987년 12월, 103pp
- 15) 문화청 문화재부 기념물과 감수 (2005): “일본의 문화적 경관 -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문화적 경관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 도세이샤, 323pp
- 16) 문화청 문화재부 감수 (2007): 특집 천연기념물이 목표로 하는 것; 월간 문화재, 2007년 4월호 (통권 제523호), 제일법규, p.p.4-27, ISSN 0016-5948
- 17) 문화청 참사관 (건조물담당) (2011): 지역 문화재 숲 시스템 추진사업; 월간 문화재, 2011년 8월호 (통권 제575호), 제일법규, p.p.46-51, ISSN 0016-5948